고양창릉 기업이전단지 (고양현천) 이주대책 등 시행공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245호(2020.03.06.)로 지구지정 고시된 “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” 관련, 제2024-372호(2024.07.15.) 고시로 추가편입된 **고양창릉 기업이전단지(고양현천)의 사업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** 및 **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로 양도한 분들을 대상**으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에 의거, 이주 및 생활대책, 협의양도인택지(주택)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, 협의양도인택지(주택)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○ (신청기간) 2026. 11. 19.(목) ~ 2026. 12. 21.(월) (10:00~16:00)
(주말, 휴일 및 공휴일, 점심시간 제외)

○ (신청방법) 방문 또는 우편

보상 소재지	시행자	주소	전화번호
현천동	LH	(10585) 경기도 고양시 지축1로 7, LH 고양사업본부 보상팀	031-930-9714, 9721, 9772

-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(2026.12.21.)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
2. 대상자 선정기준일 : 2021. 09. 03. (현천지구 공람공고일)

※ 이주자택지·생활대책용지·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
: 2020.09.03.(기준일 1년 이전)

3. 시행내용

구 분	공급유형
이주대책	이주자택지, 이주자주택, 이주정착금
주택의 특별공급 등	국민주택, 공공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매입임대 등
생활대책	상가부지, 분양상가, 임대상가
협의양도인 대책	협의양도인택지, 협의양도인주택

4. 이주대책 신청관련 안내사항

① 「고양창릉 기업이전단지(고양현천) 이주대책 등 안내문」은 지구 주민 등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(협의양도인 포함)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(협의양도인 포함)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② 이주 및 생활대책(협의양도인 포함)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, 자격미달,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③ 대상자는 개인에 한정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, 대상자 확정여부는 관련 규정 및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사 후 개별통지 드릴 예정입니다.

④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한국토지주택공사